

신기술(특허공법)관련 사용협약서

- 신기술(특허공법)명 : 강제 도장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강재의 도장 방법
 - 신기술(특허공법) 번호 : 특허 제 10-1230290호
- 발주자(갑) :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
 - 신기술(특허공법) 적용 공사명 : 국도25호선 수산대교(2공구, P8~P12) 보수공사
- 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 : 부림산업개발(주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“국도25호선 수산대교(2공구, P8~P12) 보수공사”에 대하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는 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(특허공법)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범위) ① 위 공사 중 신기술(특허공법)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(설계내역서 포함)에 의한다.
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(특허공법)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“발주자”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기술사용료 등)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(특허공법)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“신기술(특허공법)보유자”는 신기술(특허공법)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(0%)을 공사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.

② “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”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“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”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③ 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“건설 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”에 따라 처리한다.

제4조(하도급 등)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(특허공법)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(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)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“신기술(특허공법)보유자”는 “낙찰자”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“신기술(특허공법)보유자”가 “낙찰자”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(낙찰률이 80% 미만인 경우에는 80%) 및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.

제5조(설계변경 등)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(특허공법)과 관련하여 “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”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,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“발주자”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“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”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
2018년 9월 일

“발 주 자”

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

“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” 부림산업개발(주)



신기술(특허공법)관련 사용협약서

- 신기술(특허공법)명 : 강제 도장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강재의 도장 방법
 - 신기술(특허공법) 번호 : 특허 제 10-1230290호
- 발주자(갑) :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
 - 신기술(특허공법) 적용 공사명 : 국토25호선 수산대교(2공구, P8~P12) 보수공사
- 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 : 부림산업개발(주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“국토25호선 수산대교(2공구, P8~P12) 보수공사”에 대하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는 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(특허공법)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범위) ① 위 공사 중 신기술(특허공법)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(설계내역서 포함)에 의한다.
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(특허공법)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“발주자”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기술사용료 등)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(특허공법)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“신기술(특허공법)보유자”는 신기술(특허공법)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(0%)을 공사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.

② “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”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“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”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③ 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“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”에 따라 처리한다.

제4조(하도급 등)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(특허공법)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(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)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“신기술(특허공법)보유자”는 “낙찰자”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“신기술(특허공법)보유자”가 “낙찰자”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(낙찰률이 80% 미만인 경우에는 80%) 및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.

제5조(설계변경 등)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(특허공법)과 관련하여 “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”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,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“발주자”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“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”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
2018년 9월 일

“발 주 자”

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



(인)

“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” 부림산업개발(주)



(인)